

의안번호	2215773
의 퇴 인	최혁진의원
회 답 일	2026.2.6.
추 계 번호	25D7406

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사회성과보상사업 종합계획 수립,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2,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9억 1,700만원(연평균 1억 8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종합계획 수립 (안 제4조)	177	-	-	-	-	177	35
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설치· 운영(안 제5조 및 제10조)	148	148	148	148	148	740	148
합 계	325	148	148	148	148	917	183

주: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만을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종합계획의 수립 등)	-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5조(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)	-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둠 -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	-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
4	안 제10조(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)	-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둔	의무규정
5	안 제15조(사회성과보상)	-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사업비 및 성과보상금을 지급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 (종합계획의 수립 등)	○	
2	안 제5조(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)	○	
3	안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	-	미대상: 안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 조직 및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4	안 제10조(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)	○	
5	안 제15조(사회성과보상)	×	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사업비 및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제정안 시행 이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실시하게 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수, 사업의 규모, 사업 예산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4조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함)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 최근 5건의 예산액을 평균하여 추계함
 -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수립한다고 가정
- 안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와 안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각각 12명, 8명으로 가정함
 - 안 제5조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,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, 각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를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안 제5조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와 안 제10조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각각 12명, 8명으로 가정
 - 안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, 동 위원회를 설치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17개 광역시·도에만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
 -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,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¹⁾으로 가정
 -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²⁾를 적용함

- 1)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(기획재정부,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).
- 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5년 11월 기준, 단위: %)

구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3	2.0	1.9	2.0	2.0	2.0	2.0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종합계획 수립(안 제4조)

- 안 제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7,700만원으로 추계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(최근 5건) 예산 평균금액인 1억 6,300만원³⁾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7년에만 비용이 발생

[표 2]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종합계획 수립 (안 제4조)	177	-	-	-	-	17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5조 및 제10조)

- 안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4,800만원 등 5년간 총 7억 4,000만원으로 추계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2명과 17개 시·도 소속 심의위원회 8명의 민간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
 - (연간 소요) 민간위원 148명 × 25만원 × 연 4회 = 1억 4,800만원

3)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(자료: prism.go.kr)

-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90백만원),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327백만원),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98백만원),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37백만원),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(65백만원)
-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[표 3]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설치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설치·운영(안 제5조 및 제10조)	148	148	148	148	148	74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2,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9억 1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종합계획 수립 (안 제4조)	177	-	-	-	-	177
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설치·운영 (안 제5조 및 제10조)	148	148	148	148	148	740
합 계	325	148	148	148	148	91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만을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